



한중 양국의 특허제도 비교

개정 중국전리법 기준

특허청 심사4국 정보과 김성운

1. 중국의 특허제도

- 1) 시행 : 1985년 4월 1일
- 2) 1차 개정 : 1992년 9월 4일
- 3) 2차 개정 : 2000년 8월 25일
(시행:2001년 7월)

□ 2차 개정의 주요 개정 내용

- 허락판매(offering for sales) 금지규정 산입:
타인의 판매촉진행위 금지
- 소 제기 전에 침해행위의 정지와 재산보호의 조치를 인민법원에 청구가능
-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시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국가지식산업권 발행의 검색보고서 제출 명령 가능
-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권리분쟁의 최종심을 국가지식산업권 복심위원회에서 인민법원으로 변경
- 이의신청제도의 폐지(무효심판만 존속)

2. 중국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

- 1) 국가지식산업권(원명: 전리국)
 - 인원 : 국장(청장)1인, 부국장(차장)4인, 사

장(국장)14인 등 1300여명

- 기능 :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신청의 수리와 심사, 심판.

2)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

- 인원 : 국장1인, 부국장 4인, 정부사장 31인 포함 260명
- 기능 : 상표권 신청의 수리와 심사, 심판 및 공상 행정 관리 업무

3) 국가신문출판서(국가판권국)

- 인원 : 국장1인, 부국장4인, 정부사장31인
- 기능 : 저작권 및 신문출판물의 관리 행정

3. 주요국 산재권 출원현황

□ 중국지식산업권

2000년 7월 1일 현재

국가	총계	2000년	2000년 6월			
		합계	소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일본	57,311	4,420	733	566	3	164
미국	47,849	3,823	363	319	4	40
독일	16,756	1,275	122	108	1	13
한국	10,192	777	150	124	5	21
프랑스	7,850	622	91	65	0	26

- 특허, 실용신안, 의장 3권-

4. 한중 양국의 특허제도의 비교

1) 산업재산권법의 종류

한 국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 상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리법 (특허, 실용신안, 의장 포함) □ 상표법

2) 한중 양국의 특허법 비교

(a) 발명의 정의

한 국	중 국
(특허법 제2조)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전리법 제2조) 본법에서 칭하는 발명창조는 발명(특허),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의장)를 말한다.

(b) 특허권 불수여 대상

한 국	중 국
특허법 제32조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리법 제5조 국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공중도덕 혹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하여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리법 제22조 아래의 각항에 대하여는 전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력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4) 동물과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건 상기 제 4)항에 열거된 상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c) 외국에의 특허신청 제한

한 국	중 국
제한 규정 없음	전리법 제20조 중국의 회사나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때는 먼저 국가지식산업권국에 출원을 한 후 전리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한다.

(d) 특허권 수여의 조건

한 국	중 국
특허법 제29조 ★ 항 산업상 이용성과 신규성 규정 ★ 항 진보성 규정	전리법 제22조 전리권 수여의 발명과 실용신형은 신영성(신규성), 창조성(진보성)과 실용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e) 권리 존속 기간

특 허		실용신안	
한 국	중 국	한 국	중 국
88조★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42조 출원일로부터 20년	36조★항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	42조 출원일로부터 10년



(f) 1군의 발명

한국	중국
<p>특허법 제45조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10조 1 고안을 1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 한다.</p>	<p>전리법 제31조 하나의 총체적인 발명구상에 속하는 두 항목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1건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p>

(g) 심사청구

한국	중국
<p>특허법 제99조 누구든지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능</p>	<p>전리법 제36조 -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 국가지식산권국은 필요로 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 실질심사 진행 가능</p>

(h) 자료제출 명령

한국	중국
<p>제한규정 없음</p>	<p>전리법 제66조 외국에 이미 출원한건에 대하여 전리국은 출원인에게 그 외국이 진행한 검색자료나 심사결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그 출원은 철회된것으로 본다.</p>

(i) 실용신안 제도

한국	중국
<p>실용신안법 제36조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실용신안권 제44조 실용신안권자는 기술평가유지결정의 등분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p>	<p>전리법 제40조 방식심사결과와 거절이유가 없을 때 전리국은 전리권 수여의 결정을 하고 공고한다. 실용신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리법 제57조 침해분쟁시 인민법원이나 전리관부문은 전리권자에게 국가지식산권국이 작성한 검색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j) 심판제도

담당부서		심판의 종류	
한국	중국	한국	중국
<p>특허심판원</p>	<p>전리국 전리복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심사권 하여 심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절사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전리권 강제실시에 대한 사용비 재결

(k) 거절사정 불복심판

한국	중국
<p>특허법 제132조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전리법 제41조 전리신청인이 지식산권국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청구를 할 수 있다.</p>

(l) 무효심판

한국	중국
<p>특허법 제133조 이해 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전리법 제45조 전리권 수여 후 어떤 회사나 개인도 그 수여가 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전리복심위원회에 무효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p>

(m) 심판청구기간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제132조의 3 거절사정등 본을 송달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41조 거절사정등 본 송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133조 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제133조 2항 특허권이 소 멸된 후에도 가능	제45조 전리권 수여 가 본법의 규 정에 부합하 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n) 심결 불복 소송

한국	중국
특허법 제186조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	제41조 제46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

(o) 권리 보호범위

한국	중국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전리법 제56조 발명 혹은 실용신형 전리권 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하며, 설명 서와 도면은 청구범위의 해 석에 이용될 수 있다.

(p) 특허권자의 보호

한국	중국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 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전리법 제57조 전리권자는 허가를 얻지않고 그 전리를 실시한때, 즉 전리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때는 당 시자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치 않거나 협상이 성 립되지 않을 때 전리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 를 제기하거나전리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리법 제61조 전리권자나 이해관계인은 타 인이 자신의 전리권을 침해하 고 있거나, 하려고 할 때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 려가 있을 때 인민법원에 유관 행위의 정지와 재산보호조치 의 청구를 할 수 있다.

(q) 침해액의 추정

한국	중국
특허법 제128조 항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권리 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 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 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 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 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전리법 제 60조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 리자가 침해로 인해 받은 손 해 혹은 침해자가 침해행위 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혹 은 침해자의 획득이익을 확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전 리권 허가 사용비의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 한다.

〈특허청 수요이카데미〉